외주검사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

제1조(목적)
본 특수조건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(이하 “병원”이라 한다)과 계약상대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)간에 체결한 외주검사용역 연간단가계약에 적용되며, 우선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일반사항)
“병원”은 필요로 하는 검사물을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위탁하고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수거, 운반, 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.

제3조(계약기간 및 수량증감)
① 계약기간은 2026.04.08.부터 2026.12.31.까지로 한다.
②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“병원”은 필요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증감 조정 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.

제4조(검사물 수거)
①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병원”이 의뢰한 검사물을 매일 업무종료 30분 전까지 검체를 접수,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② “병원”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응급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①항의 조건에 불구하고 “계약상대자”에게 검사물의 수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병원”이 의뢰한 검사물을 적절한 실온, 냉장 및 냉동 등의 설비를 갖추어 분실, 손괴하지 않도록 운송하여야 한다.
④ 매일 검체 수거 전에 외부의뢰 검체접수목록(검사의뢰지 겸용)을 출력하여 상호확인 날인하며, 목록에는 환자정보 및 재검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기록·관리되어야 한다.

제5조(검사실시)
①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병원”이 의뢰한 검사물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물을 수거한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시행한다. 다만, 검사하는 날을 정하여 실시하는 항목은 예외로 한다.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검체 및 용기종류, 검사방법, 결과단위, 참고치 등이 변경될 경우 2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, 검사에 필요한 검체 용기를 무상 공급한다.

제6조(검사결과 통보)
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검사 실시 후 지정된 검사 소요일에 따라 1차로 유선 또는 전산망(Online System)을 통하여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, 2차로는 “병원”의 소정 양식에 따른 결과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상기 ①항의 결과 통보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“병원”의 승인을 받아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“병원”의 승인 없이 기한내에 검사결

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 3회 발생시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,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③ 검사결과는 “병원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, 결과 입력유형이 전산시스템에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별지 보고한다.
④ 의뢰되는 검사 항목의 quality control date를 “병원”이 요구할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제출하여야 한다.
⑤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병원”의 EMR 프로그램과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.
⑥ “계약상대자”는 월말통계를 작성하여 “병원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⑦ “계약상대자”는 Duplicate testing & Internal proficiency testing의 협조가 가능하여야 한다.

제7조(제반비용 부담 및 지원사항)
① 계약상대자는 외주검사용역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체수집요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온라인 전용회선에 필요한 PC 및 외주검사에 필요한 용기 및 소모품 등을 무상지원 하여야 한다.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수탁검사외에 “병원”의 요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혈액 및 감염성검체 운송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
제8조(배상책임)
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기간 중 “병원”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물의 정밀한 분석 및 검사결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검사물의 손괴 및 검사결과의 오판,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“병원”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제9조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
“계약상대자”는 “병원”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,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.

제10조(검사료 청구 및 지급)
“계약상대자”는 검사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하며, “병원”은 청구금액에 대하여 “병원”의 회계규정에 의하여 검사료를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지급한다.

제11조(계약금액의 조정 등)
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라도 부당이익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.
② 환수조치방법은 “계약상대자”는 지급할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병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③ 보건복지부 보험수가 인하,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그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인하·인상률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.

④ 계약 후 발생하는 신규검사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항목에 따른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며, 계약단가는 상기 ③번 항을 따른다.
⑤ 신규검사항목이 어느 특정 그룹에 포함되지 않을시는 “병원”이 판단하여 결정한다.
⑥ 계약기간 동안 국가차원의 정책변화, “병원”의 정책변화 혹은 시설, 인력 및 장비변동 등으로 의뢰 검사항목에서 “병원”이 자체검사를 할 경우에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2조(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)
“병원”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보증보험증권은 병원에 귀속되며, 병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.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1. 계약서상의 계약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
2.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내에 검사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
3.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4.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
제13조(재판의 관할)
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“병원”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